

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이 있을까?

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판례를 통하여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되면 다른 채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A(가해자)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B(피해택시)씨가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B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와 A씨 소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보험회사)회사는 B씨에게 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약 930만원의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C회사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의 가해자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까요?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알아보기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로서 각각의 채무는 서로 독립적이다. 민법에 규정된 절대적 효력사유 이외에 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중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업무상 과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 즉 의사나 자동차운전사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는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되는데, 이러한 것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한다.

판례

C회사가 보험자로서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A씨가 가해자(피보험자)로써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C가 B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B의 C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의 정리

1. 가해자 A와 보험회사 C는 연대채무자관계에 있다. C가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
2. A와 C의 채무는 서로 독립적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은 절대적 효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은 A채무에 대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절대적 효력사유

이행의 청구, 경계, 상계, 채권자지체,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3. 따라서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